
일본의 MVNO 규제제도 현황 및 시사점

김병운*

The Regulations and Implications fo MVNO in Janpan

Byung-woon Kim*

요 약

2002년 6월 11일 총무성은 이동통신분야에 있어서 경쟁을 촉진하고 한층 다양하면서도 저렴한 서비스의 제공으로 이용자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의 무선망을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MVNO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MVNO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파법의 적용관계에 관한 가이드라인」(안)을 책정·공표하였다. 본 고에서는 일본의 MVNO 등장배경과 MVNO 규제제도 현황을 검토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ABSTRACT

To increase consumer benefit and to expand the competitiveness of the mobile telecommunications market, the Ministry of Public Management, Home Affairs,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MPHPT) announced guidelines of MVNO in June 11, 2002. Thus, this paper examines the MVNO regulations in Japan and its implications.

키워드

MNO, MVNO, 이동망,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1. 서 론

최근 일본에서의 이동통신시장의 휴대전화 보유의 확대, MVNO 시장확대 전망, 무선인터넷망의 개방 그리고 Virgin Mobile 시장진입 전망은 MVNO의 등장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또한, 2002년 6월 11일 총무성은 이동통신분야에 있어서 경쟁을 촉진하고 저렴한 서비스의 제공으로 이용자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의 무선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MVNO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MVNO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파법의 적용관계에 관한 가이드라인」(안)을 책정·공표

하였다. 본 가이드 라인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및 그들의 관련법령에 입각한 제도의 적용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해설로 이루어져 있고, 「전기통신사업법」과 관련해서는 MVNO의 진입절차와 이동통신사업자(MNO)와의 계약, 타사업자와의 접속, 전화번호관리, MVNO와 이용자간 계약 등이, 「전파법」과 관련해서는 사업개시에 필요한 절차와 MNO와의 관계 등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 관련에서의 공통사항으로 국내·외에서의 로밍에 관한 유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다.

본 고에서는 일본의 MVNO 등장 배경과 MVNO 규제제도 현황을 검토한 후 시사점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화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

접수일자 : 2002. 11. 1

도출하고자 한다.

II. 일본의 MVNO 등장 배경

1. 휴대전화 보유의 확대

이동전화로 대표적인 이동통신은 Ubiquitous Network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접속수단 가운데 하나이다. 일본의 이동통신은 2001년 3월 현재, 이미 15~59세의 생활자 가운데 70% 이상이 보유하고 있는 미디어로서 자리잡고 있으며 사회생활만이 아닌 기업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1년 5월말 현재, 인구보급률 55%에 달하는 국내 이동전화 및 PHS의 총계약수는 6,848만건이며 2005년도 말이면 인간이 직접보유·이용하는 용도만으로 9,000만건을 넘을 것으로 NRI는 예측하고 있다.¹⁾ 이러한 이동통신시장의 확대는 전세계적인 추세로 유럽제국에서 이동전화 인구보급률은 일제히 60%를 넘어서고 있으며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이다.

2. MVNO 시장확대 전망

Ovum(2000)은 MVNO의 접속회선과 수익이 전체 이동통신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조금씩 늘어갈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3G 서비스가 가장 활성화 되리라 예상되는 2005년에 이동통신시장의 약 2.5% 정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더군더나 이동통신 사업자의 매출액에는 수익뿐만 아니라 접속료 등과 같은 기타 이익이 포함되어 있음과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시장점유율을 감안하면 향후 MVNO의 시장점유율은 최소 3% 이상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²⁾

한편, 영국의 ARC 그룹은 일본에서 MVNO 가입자수가 2002년 약 100만명에서 2006년에는 700만명을 상회하여 전 이동통신 가입자의 6.5%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하였다.³⁾

3. 무선인터넷망의 개방

NTT DoCoMo는 2001년 3월 22일 i-mode의 3단계 개방 정책을 하면서, 2003년 3월까지 500억엔을 투자하여 i-mode 서비스 망을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1단계는 공식사이트 선정기준의 공개로 망 개방 정책 발표와 같은 날에 자사 홈 페이지에 공개하였다. 공식사이트 선정 과정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여 CP들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한다는 취지이다. 2단계는 과금시스템의 개방으로 포털 개방의 실질적인 효과를 얻고 요금회수 대행 사이트 확대를 통하여 콘텐츠를 개장하자는 것이다. 마지막 3단계는 2003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게이트웨이의 개방으로 타 ISP의 DoCoMo 망을 이용한 사업 진출을 허용하는 것이다.

또한 보안문제, 망에 대한 영향 그리고 서비스의 책임 한계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망 개방을 결정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던 KDDI는 2001년 5월, 망 개방이 자사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접속을 원하는 ISP에게 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자회사인 DDI 포켓를 통해 MVNO 사업자인 일본통신에게 2001년 10월, 경세라커뮤니케이션에게 2002년 1월부터 PHS 망을 임대하여 데이터통신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⁴⁾

4. Virgin Mobile의 등장

Virgin Mobile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하고 있는 MVNO로 일컬어지고 있다. Virgin Mobile은 항공, 음악, 여행 그리고 철도 등 폭넓은 분야에 진입하고 있는 Virgin Group과 영국의 이동전화사업자 One2One 과의 절반 출자에 의한 제휴벤처로 1999년 11월에 MVNO로서의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2002년 1/4분기말 현재, 영국에서의 계약수는 1,607만명에 달하고 있다. 이는 같은 시기에 영국의 전체 이동전화 계약수의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지만 성숙된 영국 시장에서의 후발사업자로서 순조로운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Virgin Mobile의 등장은 정체를 하고 있는 유럽의 이동전화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회사는 Virgin Mega Store, V Shop(Virgin Group의 Antenna Shop)등 독자적인 판매채널을 활용하여 독

1) NRI, 「정보통신이용자 동향조사」, 2001. 3.

2) OVUM, *Virtual Mobile Services : Strategies for Fixed and Mobile Operators*, 2000.

3) www.nikkei.com.

4) www.kddi.com

자적으로 조달한 Virgin의 로고가 들어간 단말을 독자적인 요금플랜에 의해 판매하고 직접 요금을 회수하였다. 또한 이동전화로부터 Virgin Record 음악, Virgin Atlantic 항공 그리고 Virign Trevel 여행의 티켓예약 등 여러 콘텐츠에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즉,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서비스는 MNO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네트워크의 설비는 MNO인 One2One사로부터 빌리고 있는 가상사업자이다. Virgin Mobile의 출현에 자극을 받은 다수의 MVNO가 유럽시장에서 등장하고 있다.

한편, Virgin Mobile 은 2000년부터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 2000년 11월 싱가포르의 호스트네트워크 사업자인 SingTel 과 제휴하여 싱가포르 시장에 진출하였으며, 일본시장 진출을 위해 KDDI 산하 Tu-Ka 그룹 등 몇몇 사업자와 일본시장 진출을 위해 교섭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

III. 일본 MVNO 규제제도 현황⁶⁾

1. MVNO 정의

MVNO의 경우 다양하고 창의적인 기획으로 보다 세심하게 이용자의 요구에 대응한 다양한 사업모델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현시점에서는 MVNO로서 상정되는 사업모델(서비스 제공형태)을 총괄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편의적인 정의(working definition)로서 MVNO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즉, MVNO란 a) MNO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도매 전기통신역무 포함)로서의 이동통신서비스(이하 「이동통신서비스」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서 b) 해당 이동통신서비스에 관한 무선국을 직접 개설하고 있지 않은 자로써 정의한다.⁷⁾ 이 때, MVNO가 운영하는 해당 이동통신서

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시설비(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제2항)를 설치하지 않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 제2종 전기통신사업에 해당된다.

또한, MVNO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업자가 해당 이동통신서비스 이외의 부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에 입각하여 총무대신의 허가를 받아 직접 전기통신시설비를 설치하여 제1종 전기통신사업으로서 사업전개를 도모하거나 전파법에 입각하여 총무대신의 면허를 받아 직접 무선국을 개설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제2종 전기통신사업으로서 해당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MVNO인 부분에 착안하여 법의 적용관계 등에 대하여 기술하도록 한다(그림 1 참조).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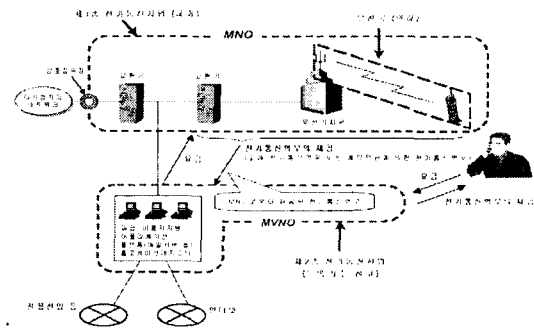


그림 1. 가이드라인이 상정하는 MVNO

2. 전기통신사업법에 관한 사항

(1) MVNO의 사업형태 및 사업개시에 필요한 절차
 MVNO가 운영하는 사업은 제2종 전기통신사업에 해당되므로 해당사업을 개시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입각한 소요의 절차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해당사업이 소위 「공전공접속」에 의해 음성서비스를 불특정다수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제2종 전기통신사업 및 외국과의 통신을 위해 전기통신시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제2종 전기

한다.

8) 總務省, 本ガイドラインにおいて想定しているMVNOの例 (イメージ図), 2002. 6. 12

5) www.virginmobile.com

6) 總務省, MVNOに係る電氣通信事業法及び電波法の適用關係に關するガイドライン, 2002. 6. 12

7) 여기서 MNO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1종 전기통신사업을 운영하는 자로써 해당 이동통신서비스에 관한 무선국을 직접 개설하여 그 면허(포괄면허 포함)를 받고 있는(면허 불필요국 제외) 자를 말

통신사업인 경우에는 특별 제2종 전기통신사업에 해당되고(사업법 제21조 제3항), 해당사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총무대신의 등록을 받아야만 한다(사업법 제24조 제1항, 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 예를 들어 MNO로부터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받아 이용자에게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국제간 네트워크도 구축하여 국제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경우(단, 예를 들어 국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국내에서 접속하여 국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외), 특별 제2종 전기통신사업에 해당되며 상기의 등록절차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해당사업이 상기 이외의 제2종 전기통신사업인 경우에는 일반 제2종 전기통신사업(특별 제2종 전기통신사업 이외의 제2종 전기통신사업)에 해당되고, 해당사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총무대신에 신고만 하면된다(사업법 제22조 제1항 및 제2항, 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의 2).

(2) MVNO와 MNO간 계약관계

MVNO는 MNO로부터 전기통신역무(도매 전기통신역무 포함)를 받음으로써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다. 그러나 MNO로부터 MVNO에 대한 역무제공 형태로서는 도매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또는 계약약관 등에 입각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으로 2가지 형태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그 모두를 채용할 것 인지는 각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영판단에 맡겨져 있다.

MVNO가 MNO로부터 도매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받을 경우 MNO에 도매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할 의무는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계약체결이 전제가 된다. 이 때 MNO는 도매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시 그 계약서의 사본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그 실시일까지 총무대신에 신고해야만 한다(사업법 제39조의 5 제1항, 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의 5). 그러나 해당 MNO가 도매 전기통신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계약약관을 규정하고 총무대신에 신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변경할 경우 지체없이 그 뜻을 총무대신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사업법 제39조의 5 제2항, 동조 제5항). 또한 도매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MVNO와 MNO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총무대신에 의한 협의명령·재정⁹⁾ 또는 전기통신사업 분쟁처리위원회에 의한 알선·중재¹⁰⁾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MNO가 도매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시, MVNO에 대해 부당한 차별적 대우나 부당한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총무대신에 의한 업무개선명령 대상이 되기도 한다¹¹⁾.

9) 총무대신에 의한 협의명령·재정 ; 특별 제2종 전기통신사업자인 MVNO가 MNO에 대하여 도매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MNO가 그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또는 해당협의를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총무대신에 의한 협의의 개시·재개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사업법 제39조의 6에서 준용하는 제39조의 4 제1항). 또한 도매 전기통신역무와 관련하여 요금·제공조건 외에 계약의 세목에 대한 당사업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총무대신의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사업법 제39조의 6에서 준용하는 제39조 제3항).

10) 전기통신사업 분쟁처리위원회에 의한 알선·중재; MVNO가 MNO에 대하여 도매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MNO가 그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또는 해당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도매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요금·제공조건 외에 계약의 세목에 대하여 당사업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MVNO는 전기통신사업 분쟁처리위원회에 알선을 신청할 수 있다(사업법 제88조의 12 제1항). 또한 도매 전기통신역무와 관련하여 요금·제공조건 외에 계약의 세목에 대하여 당사업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MVNO 및 MNO는 쌍방의 합의하에 전기통신사업 분쟁처리위원회에 대하여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사업법 제88조의 13 제1항). 또한 상기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기통신사업 분쟁처리위원회 「IT시대의 공정한 분쟁해결을 향하여 -원활한 전기통신사업 전개를 위한 제도와 실무-」 (<http://www.soumu.go.jp/hunso/index.htm>)에 기재되어 있다.

11) 총무대신은 MNO가 도매 전기통신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부당한 차별적 대우를 하거나 도매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업무에 관한 부당한 운영을 함으로써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업무의 적정한 실시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공공의 이익이 현저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MNO에 대해 이용자의 이익 또는 공공의 이익확보를 위해 필요한 한도내에서 업무방법의 개선·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사업법 제36조 제4항). 또한 시장 지배적인 MNO(사업법 제3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입각하여 총무대신의 지정을 받은 것)는 그 전기통신업무에 대하여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부당하게 우선적인 대우를 하거나 또는 이익을 주거나, 부당하게 불리한 대우를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총무대신은 이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행위의 정지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사업법 제

MVNO에 있어서, MNO가 사업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입각하여 신고한 요금 및 제3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입각하여 신고한 계약약관(본 가이드라인에서 「계약약관 등」이라고 한다)에 입각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받아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실시하려는 경우, 해당 MNO는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의무가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사업법 제34조). 또한 MNO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할 경우에 그 업무방법이 적절하지 않아 이용자인 MVNO의 이익을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총무대신에 의한 업무개선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3) 타사업자와의 접속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제2종 전기통신사업으로서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MVNO라 정의하고 있으나 MVNO인 사업자의 사업전개에 있어서 특단의 제약은 없고, MVNO로서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외의 부분에 대해 MNO, 유선통신사업자등 복수 사업자의 네트워크와 이들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전기통신역무를 조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도매 전기통신역무 또는 계약약관 등에 의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받는 등 타사업자의 전기통신 회선설비와 접속하여 종단간 해당사업자가 요금의 설정·징수를 하는 경우 등이 가능하다. 타사업자와의 전기통신 회선설비 접속에 대하여 도매 전기통신역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총무대신에 의한 협의명령·재정 또는 전기통신사업 분쟁처리위원회에 의한 알선·중재의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¹²⁾.

37조의 2 제3항, 동조 제4항). 또한 이들 총무대신에 의한 시정조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행위의 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총무성 「전기통신사업분야에 있어서 경쟁의 촉진에 관한 지침」에 기재되어 있다.

12) 자세한 내용은 전기통신사업 분쟁처리위원회, 「IT 시대의 공정한 분쟁해결을 향하여 - 원활한 전기통신사업 전개를 위한 제도와 실무 -」 (<http://www/soumu.go.jp/hunso/index.htm>) 참조.

(4) 전기통신번호(전화번호) 관리

현재, 이동통신서비스에 관한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단말계 전송로설비(이동전화와 PHS의 무선기지국 등)를 식별하기 위한 전기통신번호로서 총무대신에 의해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마다 지정되도록 되어 있으며(전기통신 번호규칙 제9조 및 별표 제1), 제2종 전기통신사업자인 MVNO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전화번호가 지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MVNO가 MNO의 전기통신 회선설비에 접속되는 이동단말 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하여 역무제공을 하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상 전화번호의 지정대상은 MNO이다.

즉, MVNO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원인 MNO에 부여된 전화번호의 테두리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필요에 따라 해당 MNO와의 사이에 전화번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또한 해당번호의 MNO로부터 MVNO로의 양도 형태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MVNO와 MNO간 계약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과법상 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5) MVNO와 이용자간 계약관계¹³⁾

MVNO가 특별 제2종 전기통신사업자인 경우 해당 MVNO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요금 및 제공조건에 대한 계약약관을 규정하고 그 실시전에 총무대신에 신고해야만 한다(사업법 제31조의 3 제1항, 제31조의 4 제9항). 또한 요금·제공조건에 대해서는 해당 신고에 관한 요금·계약약관에 따르지 않으면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해서는 안된다(사업법 제31조의 3 제2항, 제31조의 4 제10항). MVNO가 일반 제2종 전기통신사업자인 경우 이용자간 계약에 대해서는 특단의 행정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총무대신은 a) 업무의 방법과 관련하여 통신의 비밀 확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b) 사고에 의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장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수리 외의 조치를 신속

13) 이용자와의 사이에서는 어디까지나 MVNO가 계약당사자로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이행 책임을 져야한다(이 때문에 MNO와 MVNO간 민사 계약사항으로서, MNO의 하자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분담관계 등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게 시행하지 않을 경우 c) 그 외에 업무방법이 적절하지 못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용자의 이익 또는 공공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내에서 MVNO에 대해 업무의 방법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사업법 제37조).

3. 전파법에 관한 사항

(1) 사업개시시에 필요한 절차

MVNO는 사업개시시, MNO가 면허인으로 되어 있는 무선국(기지국 및 단말)을 사용하여 이동통신서비스를 개시하므로 무선국면허를 취득할 필요는 없다¹⁴⁾. 또한 MVNO는 MNO로부터 주파수의 제공을 받아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파수를 확보하여 자기의 역무로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2) MVNO와 MNO의 관계

MNO는 기지국 및 단말에 대한 무선국면허(단말에 대해서는 포괄면허)를 보유하고 있다. 기지국 면허인 및 단말의 면허인은 모두 MNO이므로 MVNO가 제공하는 단말에 대해서도 그 발사하는 전파는 MNO에 의해 감리되어야만 한다. 이것이 불가능한 무선국 이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만약 MVNO 단말이 어떠한 경우로 다른 무선시스템에 유해한 혼선을 준 경우 그 혼선을 제거할 책무는 MNO에게 부과된다. 이 혼선의 제거와 관련하여 MVNO는 MNO에 대해 양 당사자간에 체결된 계약의 범위내에서 협력해야 한다¹⁵⁾.

4. 로밍에 관한 유의사항(전기통신사업법 및 전파법 관련)

(1) 국내 로밍

MNO간 국내 로밍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계약에

- 14) 이 경우에도 MVNO가 해당 단말에 자사 브랜드를 부착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15) 예를 들어 단말위치등록 등의 기능을 갖고 있는 설비(HLR: Home Location Register)를 MVNO가 독자적으로 갖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MVNO는 무선국 감리에 필요한 정보(예: HLR에 격납되어 있는 단말의 위치등록정보)를 계약 범위 내에서 MNO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도록 요구된다.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각 MNO는 해당 계약에 입각하여 이용자가 지불하는 요금 등을 사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입각한 요금과 제31조의 4 규정에 입각한 계약약관 가운데 규정하고 있다. MVNO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동단말 등에 대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원인 MNO의 업무구역의 지역에 있어서 해당 MNO가 로밍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다른 MNO의 업무구역에서도 동등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MVNO, 해당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원인 MNO 및 해당 다른 MNO간 로밍에 대한 계약이 필요하다¹⁶⁾.

(2) 국제로밍

MVNO가 특별 제2종 전기통신사업자인 경우 외국사업자등과 로밍계약을 체결·변경·폐지할 경우에는 총무대신의 인가를 받아야만 한다(사업법 제40조, 사업규칙 제26조). 한편 MVNO가 일반 제2종 전기통신사업자인 경우에는 특단의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 MVNO가 외국사업자의 단말에 대해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해당 MVNO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MNO는 국내에서 해당 단말의 무선국을 운용하기 위한 허가를 얻는 것이 필요하고, 해당 허가 조건은 다음과 같다(전파법 제103조의 5).

- a) MNO의 기지국과 통신하는 단말일 것
- b) MNO의 기지국으로부터의 전파를 받은 후 전파를 발사할 수 있는 것일 것
- c) 유입되는 단말의 기술기준이 국내 기술기준과 일치하고 있음이 증명되어 있을 것

한편, 국내 MVNO가 그 단말을 국외에서 운용할

16) 예를 들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원인 MNO가 다른 MNO와 로밍계약을 체결하고 있음을 전제로 할 경우, MVNO가 MNO로부터 계약약관 등에 입각하여 서비스를 받아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로밍의 취급에 대해 특단의 정리를 하지 않아도 다른 MNO의 업무구역에서도 로밍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으로 상정된다. 한편, MVNO가 MNO로부터 도매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받아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매 전기통신역무의 제공계약 가운데 로밍의 취급에 대해 계약약관과 같은 조항을 세우는 등, 그 취급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상정된다.

경우 이에 적용되는 국내규제는 존재하지 않으나 로 명치인 국가에서 유입단말에 대한 규제대상이 되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IV. 요약 및 시사점

일본의 규제제도에 따르면 총무성은 MVNO를 제 2종 특별 또는 일반 사업자로 분류하고 있다. MNO와 MVNO간 계약은 도매계약 또는 이용자 약관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어떠한 계약을 채택하는 가는 각 사업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고 있다. 단, 제1종 사업자의 경우에도 주과수 면허를 획득하지 않고도 이동통신업무를 제1종 사업면허에 추가 가능하며 이동통신역무만 제2종으로 제공하는 방식을 허용하고 있다. 이동전화 번호에 대해서는 MVNO에게 별도로 배정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MNO와 MVNO간 전화번호 계약은 MNO에 부여된 전화번호의 테두리 안에서 양자간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제외국에서도 일본에서와 같이 MVNO가 소비자의 선택 폭을 증가시켜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킨다는 인식 하에 관련법을 정비하고 있는 추세이다. 북유럽과 영국에서는 1998, 1999년경부터 MVNO에 대한 규제당국의 논의를 지속하여 핀란드, 스웨덴, 영국 등에서는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MVNO는 인정된다는 결론에 달하고 있으며, 덴마크에서도 통신법의 개정에 따라 MVNO를 인정하고 있다.¹⁷⁾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동망의 경쟁활성화, 이용자의 편익 증진, 통신망 여유용량 활용, 유무선통합 촉진, 무선인터넷의 성장동인, 3G 사업자의 투자비용에 상응하는 수익조기실현 의 방안으로써 MVNO 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일본의 MVNO 규제제도는 무선망 개방을 강제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의 사례와 더불어 국내 MVNO 규제제도 도입시 MNO와 MVNO 간의 계약관계 및 번호운영체계등에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1] NRI, 「정보통신이용자 동향조사」, 2001. 3.
- [2] OVUM, Virtual Mobile Services : Strategies for Fixed and Mobile Operators, 2000.
- [3] <http://www.nikkei.com>.
- [4] <http://www.kddi.com>.
- [5] <http://www.virginmobile.com>.
- [6] 總務省, MVNOに係る電気通信事業法及び電波法の適用關係に關するガイドライン, 2002. 6. 12.
- [7] _____, 本ガイドラインにおいて想定しているMVNOの例(イメージ圖), 2002. 6. 12.
- [8] <http://www.soumu.go.jp>.
- [9] OFTEL, Ofel Statement on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s, October 1999.

저자소개



김병운(Byung-Woon Kim)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
경제학박사

※ 관심분야: 정보통신관련 법·제도, MVNO 등

17) OFTEL, *Ofel Statement on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s*, October 1999.